

정 관

1980.	8.	13.	제정
1981.	6.	27.	개정
1983.	4.	12.	개정
1985.	1.	14.	개정
1985.	12.	31.	개정
1988.	3.	4.	개정
1998.	7.	23.	개정
2001.	1.	9.	개정
2003.	7.	1.	개정
2005.	7.	1.	개정
2015.	10.	8.	전문개정
2017.	4.	1.	개정
2018.	3.	29.	개정
2020.	11.	1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교정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교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공제회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지방교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지부를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지방교정청 등에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교정공무원의 신분으로 타 기관 또는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제5조(회원자격의 취득)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제회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② 가입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회가 운영하거나 사용권한이 있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본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과 정해진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정해진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퇴 직
2. 탈 퇴
3. 제 명
4.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5. 사 망

② 그밖에 회원자격의 상실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오게 한 사람
3. 법 또는 이 정관과 공제회의 제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 3 장 대의원회

제9조(구성과 정수) ① 대의원회는 의결기관으로 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70명 이내로 하되, 각 지부에서 1명씩 선출하며 그 정수는 교정기관의 증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별표1과 같다.

제10조(자격 및 상실) ①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정공제회의 회원으로 선출기준일 현재 회원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회원 부담금 20구좌 이상을 납입하고 있는 사람

2. 선임일로부터 퇴직 또는 정년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 남은 사람

② 대의원은 선출된 지부에서 전출되거나 정관 제7조에 따른 회원자격 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전출된 대의원이 운영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임 운영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대의원자격을 유지한다. (2017. 4. 1. 개정)

제11조(선출과 임기) ① 전국 각 지부의 대의원은 별표2와 같이 대의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2018. 3. 29. 개정)

② 대의원선출위원회는 각 지부별로 구성하며, 지부장이 교도관회의를 통해 위촉한 5명이상 10명이내의 선출위원으로 대의원선출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기관 자체에서 정한 선출기준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한다. (2017. 4. 1. 개정)

③ 선출위원은 각 지부 공제회원 중에서 선정하며, 대의원선출위원회 위원장은 선출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대의원선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에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⑤ 지부장은 선출된 대의원 명단을 대의원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부장은 소속기관의 대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신임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각 지부에서 대의원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대의원선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대의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⑧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후임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후임 대의원의 임기도 선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017. 4. 1. 개정)

제12조(소집 및 의사) ① 대의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대의원회는 이사장이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소집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항 또는 절차에 위반된 사항 등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운영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④ 대의원회의 소집은 각 대의원에게 개최일시 및 장소와 안건을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안건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대의원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 ⑥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안은 서면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⑦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대의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불참한 대의원이 다른 회원을 지명하여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이사·감사의 선출
3.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4. 사업의 기본 계획 및 예산심의
5. 결산의 승인
6. 공제회의 해산
7.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4조(구성과 정수)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② 선출방법은 대의원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거나 다른 대의원이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제15조(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 이후 개최하는 대의원회에서 후임 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후임위원의 임기도 3년으로 한다. 다만, 전출에 의한 궐위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2017. 4. 1. 개정)

제16조(소집과 의사) ①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이사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 일시 및 장소와 회의안건을 운영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안건은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전화 또

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에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는 긴급 또는 경미한 사안은 서면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불참한 위원이 다른 대의원을 지명하여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제17조(직능)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2. 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부담 승인
4. 공제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5.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6.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7. 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된 중요사항

제 5 장 임 원

제18조(구성 및 자격)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 사 4명 이내
3. 감 사 2명 이내

②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이사는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2017. 4. 1. 개정)

④ 공제회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정행정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정행정발전에 공헌한 실적이 있고, 공제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춘 사람
2. 주권상장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다년간 공기업(정부출자 및 출연, 투자기관 포함)에서 투자 또는 사업개발과 관련 있는 실무경력과 실적이 우수한 사람

⑤ 임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선출 및 모집) ① 이사장, 이사는 제18조제4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원 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수로 대의원회에 추천을 하고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적정인원이 부족한 경우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2020. 11. 11. 개정)

② 투자 또는 사업개발전문이사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공개모집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적정인원이 부족한 경우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2020. 11. 11. 신설)

제20조(임기) ①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임기 중 궐위되어 그 후임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삭제 (2017. 4. 1.개정)

제21조(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과 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영기획부장(공석인 경우

타 부서 부장 중 부서순위에 의함)이 이사장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2020. 11. 11. 개정)

③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 4. 1. 개정)

④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의2(선임수당) 비상임 감사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며, 그 세부 지급기준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017. 4. 1. 개정)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2020. 11. 11. 개정)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상실 또는 자격이 정지된 사람
6. 법률에 의한 징계로 파면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0. 11. 11. 신설)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20. 11. 11. 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제23조(신분보장)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 의결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4조(대표권의 제한) 임원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 생기는 경우 임원은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5조(겸직금지) 임원은 공제회 이외의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감사는 공제회 이외의 다른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2017. 4. 1. 개정)

제 6 장 조 직

제26조(업무부서) ① 공제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부서를 둔다.

② 업무부서의 분장업무 및 직원의 정원·인사·보수, 임용절차 등 필요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③ 공제회는 제31조의 수익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소 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27조(지부장) ① 공제회는 제3조 제2항의 각 지부에 지부장을 둔다.

② 제1항의 지부장은 각 지부의 기관장으로 한다.

제28조(자문위원 위촉) 공제회는 경영, 기금운용, 법률, 세무, 회계, 투자, 사업개발 등 기타 특수 전문기술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 7 장 사 업

제30조(목적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
2. 회원에 대한 대여
3. 회원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4. 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후생사업
5.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6. 삭제 (2017. 4. 1. 개정)
7. 공상을 입은 현직·퇴직·순직 회원에 대한 원호사업
8. 그밖에 교정행정발전 및 교정관련 유관단체 지원 등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수익사업) 공제회는 그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2018. 3. 29. 개정)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2. 식품제조업, 무역업, 창고업, 체육시설업, 예식장업, 장례식장업, 시설관리용역업, 용역경비업, 위생관리용역업, 농·축·수·임산물 생산 및 판매업, 음식점업, 다과점업, 공동 주택관리업, 노인거주복지 시설 및 병원 운

영업, 식음료 잡화 도·소매업,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의약품·의료용 기구·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3.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리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관련법령이 정하는 것
4. 유가증권 및 금융업에의 투자, 투자기관, 그 외 기타 금융업
5. 해외 직·간접 투자 사업
6. 장기성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7. 시설물유지관리업, 주차장관리업, 건물유지관리 및 위생, 냉난방·전기 등 설비 관련업
8. 정원 및 조경관리업
9. 전자상거래업 및 인터넷통신판매업
10. 해양스포츠업, 레저사업 및 스포츠사업
11. 렌트카업, 중장비매매업, 중고차량매매업
12. 보육시설 운영업
13. 콘도미니엄(호텔업), 관광 알선업, 관광농원 및 농어촌 휴양시설의 설치 및 경영업, 노인휴양시설업
14. 식음료 잡화 도·소매업
15. 자동차수리 및 세차업
16. 위생접객업, 식품위생업, 휴게음식점업, 세탁업
17. 종합레저 및 체육시설 연수시설 등의 컨설팅에 관한 사업
18. 공연관련사업, 레크레이션 및 공연장 운영업, 예술관련사업
19. 헬스케어업
20. 냉장 및 냉동창고업, 기타 보관 및 창고업
21. 육상 운송지원서비스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22. 소화물 전문운송업, 택배업
23.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24.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25.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유원시설업(물놀이 기구)
26. 연수원 회의장 운영 및 개발업
27.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8. 오락장비 임대 및 오락장운영업
29.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30. 무형재산권 임대업
31.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2. 그밖에 공제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제 8 장 자본금

제32조(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한다.

제 9 장 부담금

제33조(부담금) ① 회원의 부담금은 1구좌당 5,000원으로 하고, 신규가입 최저구좌는 4구좌로 한다.

② 부담금 조정 등 공제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부담금 납부방법) 회원은 매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다.

제35조(부담금 납부의 특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 중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 입대한 기간

2. 외국 파견 기간

3. 휴직 기간

4. 기타 회원자격 상실 후 정당한 사유로 회원자격이 회복될 때까지의 기간

제36조(소멸시효) 회원이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 10 장 회 계

제37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경비) ①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 수익금, 기금 이자와 그 밖에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 등 공제회 운영에 필요한 모임을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공제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제39조(예산의 편성과 승인)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결산보고)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회계사무규정에 따라 결산하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제42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30조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제42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결산 내역,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감사원·법무부의 감사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제1항 제1호의 공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0. 11. 11. 본조 신설)

제43조(현금관리) 공제회의 자산 중 사업자금 이외의 현금은 증식률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다만, 예치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국공채·주식·회사채 투자나 그밖에 수익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44조(특별회계) 공제회는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11 장 정관의 변경과 해산

제45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대의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변경을 의결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해산) 공제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해산시 재산관리) 공제회를 해산한 때에 그 잔여재산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 12 장 보 칙

제48조(위임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2015. 10. 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 10. 8.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교정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법인 교정협회는 교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제3조(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교정협회의 제규정은 정관 제48조에 의한 규정으로 본다.

제4조(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의원과 운영위원은 교정공제회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선출될 때까지 재단법인 교정협회 이사회가 수행한다.

제5조(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교정협회의 이사와 감사 및 직원은 공제회의 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로 한다.

제6조(재단법인 교정협회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법인 교정협회의 기본재산은 공제회의 자본금으로 본다.

부 칙 (2017. 4.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 04. 01.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비상임 감사는 정관개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직무는 비상임 감사가 선임될 때 까지 당연직 감사(교정기획과장)가 수행한다.

부 칙 (2018. 3.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 10. 13.부터 시행 한다.

제2조(대의원에 관한 경과 조치) ① 개정된 대의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부는 2018. 10. 31.까지 새로운 선정기준에 따라 대의원을 재 선정하여 공제회로 통보한다.

② 현 운영위원이 속해 있는 지부 중 개정된 대의원 선정기준에 따라 대의원을 재 선정해야 하는 지부는 신규 운영위원회 선출시까지 대의원 선정을 유보하고, 신규 운영위원 선출 후 대의원을 재 선정하여 공제회로 통보한다.

부 칙 (2020. 11. 11.)

(시행일) 이 정관은 2020. 11. 1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 11. 11.>

전국 교정기관 지부 대의원 정수

지 부 명	대 의 원 수	지 부 명	대 의 원 수
서울지방교정청	1	김천소년교도소	1
서울구치소	1	경북북부제3교도소	1
안양교도소	1	울산구치소	1
수원구치소	1	경주교도소	1
서울동부구치소	1	통영구치소	1
인천구치소	1	밀양구치소	1
서울남부구치소	1	상주교도소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1	대전지방교정청	1
의정부교도소	1	대전교도소	1
여주교도소	1	청주교도소	1
서울남부교도소	1	천안교도소	1
춘천교도소	1	청주여자교도소	1
원주교도소	1	공주교도소	1
강릉교도소	1	충주구치소	1
영월교도소	1	홍성교도소	1
강원북부교도소	1	천안개방교도소	1
평택지소	1	서산지소	1
대구지방교정청	1	논산지소	1
대구교도소	1	광주지방교정청	1
부산구치소	1	광주교도소	1
경북북부제1교도소	1	전주교도소	1
창원교도소	1	순천교도소	1
부산교도소	1	목포교도소	1
진주교도소	1	군산교도소	1
포항교도소	1	제주교도소	1
대구구치소	1	장흥교도소	1
경북직업훈련교도소	1	해남교도소	1
안동교도소	1	정읍교도소	1
경북북부제2교도소	1		
소 계	29명	소 계	28명
총 계	57명		

각 지부별 대의원 선출기준

구분	대 의 원 선정기준	해 당 지 부	비 고
① 지부장이 청장인 지부	대의원선출 위원회에서 지정한 5급	서울지방교정청지부, 대구지방교정청지부, 대전지방교정청지부, 광주지방교정청지부(4곳)	
② 지부장이 고위공무원인 지부	선출직 (5급 또는 6급)	서울구치소지부, 안양교도소지부, 수원구치소 지부, 서울동부구치소지부, 인천구치소지부, 서울남부구치소지부, 대구교도소지부, 부산 구치소지부, 경북북부제1교도소지부, 대전 교도소지부, 광주교도소지부 (11곳)	
③ 지부장이 3급 · 4급인 지부	선출직 (전직급)	화성직훈교도소지부, 의정부교도소지부, 여주교도소지부, 서울남부교도소지부, 춘천교도소지부, 원주교도소지부, 강릉교도소지부, 영월교도소지부, 강원북부교도소지부, 평택지소 지부, 창원교도소지부, 부산교도소지부, 포항교도소 지부, 진주교도소지부, 대구구치소지부, 경북직훈 교도소지부, 안동교도소지부, 경북북부 제2교도소지부, 김천소년교도소지부, 경북북부 제3교도소지부, 울산구치소지부, 경주교도소지부, 통영구치소지부, 밀양구치소지부, 상주교도소지부, 청주교도소지부, 천안교도소지부, 청주여자 교도소지부, 공주교도소지부, 충주구치소지부, 홍성교도소지부, 천안개방교도소지부, 서산 지소지부, 논산지소지부, 전주교도소지부, 순천교도소지부, 목포교도소지부, 군산교도소 지부, 제주교도소지부, 장흥교도소지부, 해남 교도소지부, 정읍교도소지부 (42곳)	

※ ②번과 ③번에 해당되는 지부가 신설되는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선출